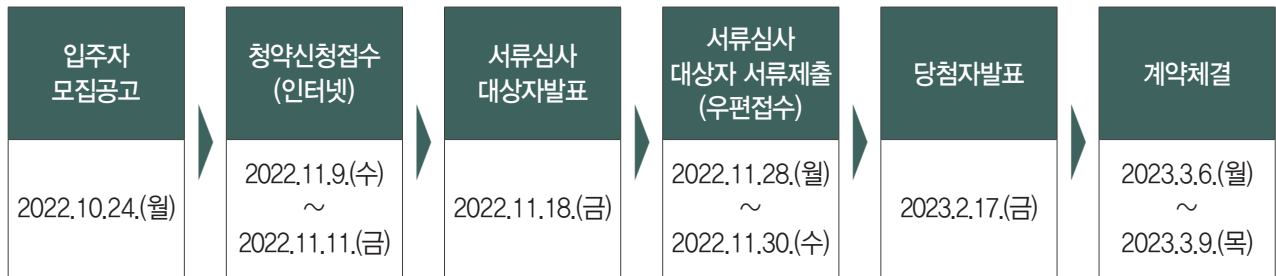


2022년 2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2022. 10. 24. 공고

▶ 공급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으로 업무처리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목 차

1. 공급일정	6
2. 신청 관련 문의	6
3. 공급현황: 126호	7
4.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10
5. 신청접수 안내	25
6.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안내	27
7. 심사서류 제출안내	28
8.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31
9. 당첨자 발표 및 동호추첨	33
10. 계약일시·장소 및 구비서류	34
11. 유의사항 안내	35
12. 임대주택 위치 및 현황	39

2022년 2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주택관리번호: 2022-000744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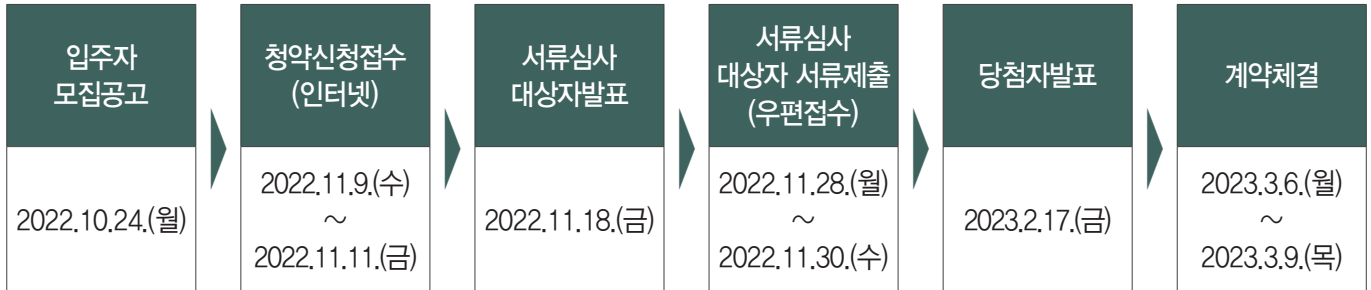
- 2022년 2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10. 24.)** 현재 청년 계층 ·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계층에게 공급되며, 모집공고일은 청약 자격 및 가점 사항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행복주택 청약 접수는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으로 받습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신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공사에서 인터넷 접수를 대행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청약의 경우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후에는 가점 산정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낮게 기재한 경우를 포함, 모든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과거 입주사실이 있는 자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중인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의 행복주택은
(주)서울리츠임대주택 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서울리츠2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 중입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 동일유형(국민 ↔ 국민, 행복 ↔ 행복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예비입주자 선정은 ①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
- **공사에서 공급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본 공고의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 및 순번은 자동 삭제처리 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항목은 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타 사업주체(LH, GH 등)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포함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일정

▶ 공급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으로 업무처리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인터넷 청약기간: 2022. 11. 9.(수) 10:00 ~ 2022. 11. 11.(금) 17:00
- 방문 청약기간 : 2022. 11. 11.(금) 09:00~16: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 방문청약은 공고문 「방문 인터넷 신청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기간: 2023. 3. 20.(월) ~ 2023. 5. 19.(금)

2 신청 관련 문의

▶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상담 관련 유의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이 진행되오니 상담 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단지 평형별 평면도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청약정보 - 전자 팸플릿 - 단지명(지구명) 검색

3 공급현황: 126호

▶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 신규: 36호 ()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대상 (신청자격)		공급호수			세대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계	우선	일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전환 구분	임대보증금및 상호전환	
											계	계약금 (20%)	잔금 (80%)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36	26	10											
래미안 엘리니티 (용두6)	34	청년	소득 있음	20	15	5	34.47	15.40	34.99	84.86	89,150	17,830	71,320	327,000	최대	102,230	261,600
			최소												71,320	364,100	
		소득 없음	84,190	16,838	67,352	309,000					최대	96,550	247,200				
											최소	67,350	344,000				
		신혼부부	10	7	3	99,050					19,810	79,240	363,000	최대	113,570	290,400	
														최소	79,240	404,200	
고령자	6	4	2	94,100	18,820	75,280	345,000	최대	107,900	276,000							
								최소	75,280	384,200							

○ 재공급: 90호 ()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대상 (신청자격)		계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세대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전환 구분	임대보증금및 상호전환	
											계	계약금 (20%)	잔금 (80%)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90	17	73											
포레카운티 (장위1)	39	청년	소득 있음	15	3	12	39.90	14.68	23.94	78.52	114,760	22,952	91,808	421,000	최대	131,600	336,800
			최소												91,800	468,800	
성북구		소득 없음	108,380	21,676	86,704	397,000	최대	124,260	317,600								
							최소	86,700	442,100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대상 (신청자격)	계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세대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전환 구분	임대보증금및 임대료의 상호전환	
										계	계약금 (20%)	잔금 (80%)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신길 센트럴자이 (신길12)	39	고령자	15	3	12	39.36	21.88	29.04	90.28	128,500	25,700	102,800	450,000	최대	146,500	360,000
														최소	102,800	503,500
영등포구	39	신혼부부	15	3	12	39.79	19.00	28.74	87.53	141,920	28,384	113,536	497,000	최대	161,800	397,600
														최소	113,530	556,100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2차 (봉천12-1)	39	신혼부부	15	3	12	39.79	19.00	28.74	87.53	141,920	28,384	113,536	497,000	최대	161,800	397,600
														최소	113,530	556,100
관악구	34	청년	15	3	12	34.93	19.58	22.96	77.47	147,350	29,470	117,880	479,000	최대	166,510	383,200
														최소	117,880	540,300
e편한세상 송파파크 센트럴 (거여2-2)	34	청년	15	3	12	34.93	19.58	22.96	77.47	147,350	29,470	117,880	479,000	최대	166,510	383,200
														최소	117,880	540,300
송파구	40	신혼부부	20	4	16	40.70	19.63	39.03	99.36	194,400	38,880	155,520	680,000	최대	221,600	544,000
														최소	155,520	761,000
공덕SK 리더스뷰 (마포로6)	40	신혼부부	20	4	16	40.70	19.63	39.03	99.36	194,400	38,880	155,520	680,000	최대	221,600	544,000
														최소	155,520	761,000
마포구	39	고령자	10	1	9	39.00	22.11	25.99	87.10	117,270	23,454	93,816	430,000	최대	134,470	344,000
														최소	93,810	478,800
꿈의숲 아이파크 (장위7)	39	고령자	10	1	9	39.00	22.11	25.99	87.10	117,270	23,454	93,816	430,000	최대	134,470	344,000
														최소	93,810	478,800
성북구																

- 신규단지의 경우 ‘공급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재공급 단지의 경우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에 기재된 수만큼 선정합니다.
- 동일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해당단지, 공급유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단지 동일 공급 유형 내 특정 계층의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고 특정 계층의 신청자가 모집호수에 미달할 경우, 공사 방침에 따라 미달된 계층의 모집호수를 초과된 계층의 모집호수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우선과 일반 모두 공급한 경우, 우선공급 신청이 미달된 호수는 해당 공급대상의 일반 공급 호수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은 입주자 선정 순서에 따라 서류심사대상자 및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시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단, 서류심사 결과 순위, 가점 관련 사항에 허위 기재 또는 오기 기재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사발생 시 해당단지, 공급유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0%입니다.
-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소득의 유무 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정하며, 당첨 이후 도래한 계약 시점에 변동 사항이 발생해도 수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공급 주택은 공급유형별로 여러 타입(예: A, B, ...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공고문의 세대 당 계약면적은 단지별 1개만 표기된 것입니다. 타입별로 계약면적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니 단지별 전자팸플릿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별 공급유형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동일합니다. (단, 공급 대상별로는 상이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셋째 자리의 처리 방식 차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이 소수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공용면적에 벽체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입니다. 기타공용면적은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방재실,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을 말합니다.
- 공급대상별로 특정 계층의 신청자가 모집 호수를 초과하고 특정 계층의 신청자가 모집 호수에 미달할 경우, 예비자 공급 시 공사 방침에 따라 미달된 계층의 모집 호수를 초과된 계층의 모집 호수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은 **(주)서울리츠2호**가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입주 예정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기금 융자금이나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울리츠 행복주택은 재개발매입형 행복주택으로 재개발조합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단지의 준공 이후 등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누수, 결로 등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 당첨 대상 인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신청 자격

4-1. 청년 계층

○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㉓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㉓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10.25.~2003.10.24.)
- ①-㉓ (사회초년생)
 -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재취업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부천시·인천광역시·김포시·고양시·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제1호의 지역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평택시·동두천시·안산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용인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광주시·포천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 자치구</u> (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u>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u> (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내 3년 이상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19.10.24.(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내 3년 미만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19.10.25.(당일포함) 이후인 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가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추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 ‘해당 세대’란,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며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을 말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③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유무를 판단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 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있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

※ **소득활동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합니다.

※ 신청 시 **해당 자치구 입력과 관련, 거주지/소득활동지 여부를 정확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착오나 오기재로 인해 증빙불가 시 결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2. 신혼부부 계층(한부모, 예비신혼부부 포함)

○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㉓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㉓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 ①-㉓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①-㉓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①-㉓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015. 10. 25. 이후 출생)
-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 또는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는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 맞벌이 신혼부부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함
-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부천시·인천광역시·김포시·고양시·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제1호의 지역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평택시·동두천시·안산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용인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광주시·포천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일반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활동소재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본인 기준으로만 신청이 가능)

○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우선공급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내 3년 이상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19.10.24.(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내 3년 미만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19.10.25.(당일포함) 이후인 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배점은 신청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대표신청자’)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및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청자가 아닌 배우자(대표신청자가 아닌 예비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은 배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여부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여부를 정확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착오나 오기재 시 수정은 불가능하며 결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으로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계층 신청 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에 거주 중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중 발급 가능한 한 가지를 추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고 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한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 청약 신청 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 관련 자치구를 입력하는 경우, 본인/(예비)배우자, 거주지/소득활동지 여부를 정확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착오나 오기재로 증빙 불가 시 결격 처리 됩니다.
- ※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와 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3. 고령자

○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 **만 65세 이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1957.10.24. (당일 포함) 이전에 출생한 자를 의미합니다.**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 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 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 에 5년 이상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7.10.24. (당일 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 에 5년 미만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7.10.25. (당일 포함) 이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 에 거주
③ 신청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호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우선공급 배점 중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자 본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의미하며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가점대상입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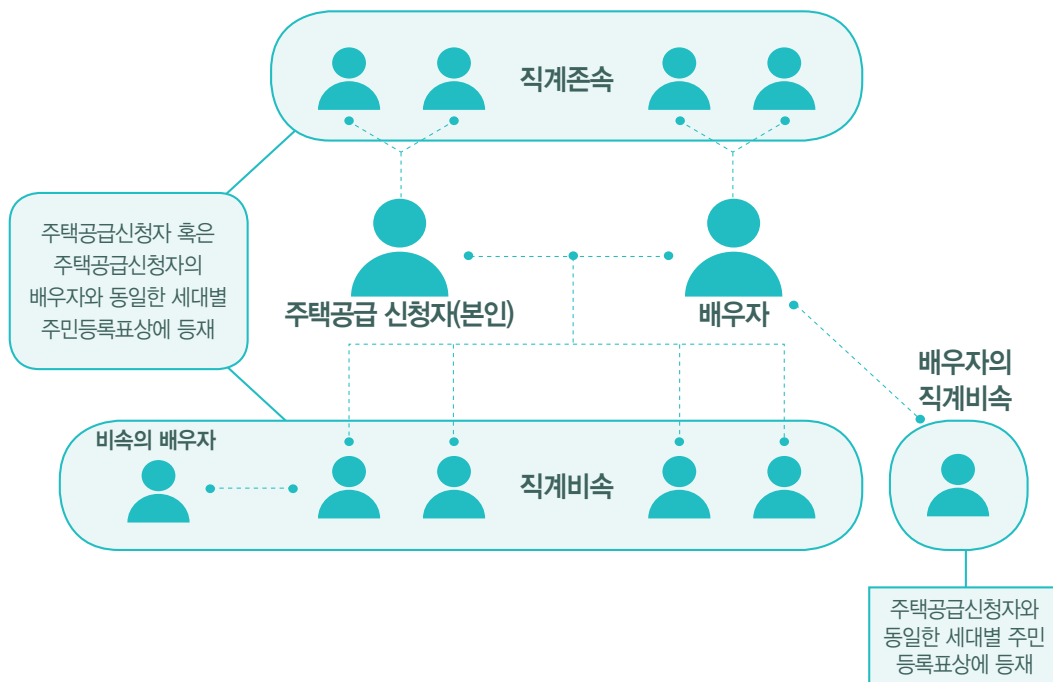
4-4. 공통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세부 사항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 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일반 공급 순위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청약신청 시 선택한 자 기준)
- 주택공급신청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입주자격조치가 불가능한 경우**(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등)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시 해당 자치구 입력과 관련하여 **거주지/소득활동지 여부를 정확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착오나 오기재로 인해 증빙불가 시 결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동일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된 경우,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청년계층의 사회초년생 일반자격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와 신혼부부 계층의 일반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자'는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또한 산정 시점은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 이번 공고의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예비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가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모든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되며 예비자 공급 시 제외 처리됩니다.
- 모든 자격요건(순위 및 가점사항 등 포함)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 전 신청 자격 **변동 여부를 조회**하여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다음 세대원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하며, 다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신청자와 주민등록표 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주민등록말소 등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해당 세대(단,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공급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주택의 범위 :
 1.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2.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 주택의 소유 기준일 :
 - 주택의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공급계약 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 소명방법: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민원회신문(공문)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서류로 제출
 -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되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 등이 20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인 경우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단, 청년 계층의 소득 유무 및 신혼부부 계층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맞벌이부부)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구분	소득 기준						
소득	○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청년 계층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 해당)	3,854,536	5,328,807	6,418,566	7,200,809	7,326,072
		고령자 계층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신혼부부 계층 (예비 포함, 맞벌이인 경우)	-	6,297,681	7,702,279	8,640,971	8,791,286	
<p>*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 가구 소득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는 1인당 평균금액*(453,753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는 1인당 평균금액*(544,503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p> <p>*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 기준금액에 1인은 20%p 가산, 2인은 10%p 가산한 금액입니다.</p> <p>*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태아 수를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함)</p> <p>* 청년 계층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세대란,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며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을 말합니다.)</p> <p>*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p> <p>※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인정</p>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금융회사의 카드로,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학생(본인)은 총자산 기준 8,600만 원 이하
- 청년 세대(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는 총자산 기준 28,8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세대, 고령자 세대는 총자산 기준 32,500만원 이하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은 정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구분		자산 기준	
총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을 말합니다.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며, 단, 아래 토지는 제외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 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p style="text-align: center;">총자산가액 산출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자동차가액 산출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기준에 따른 청년(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 · 신혼부부 · 고령자세대가 보유한 자동차가액은 현재가치 기준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자산 기준
총 자산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입주자격 검증**

- 계층별 해당 세대의 무주택·소득·자동차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사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 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주택, 소득, 자동차, 자산 보유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 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 자격별 해당 세대의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예외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니,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란에 서명하셔서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 청년 계층의 소득 유무 및 신혼부부 계층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맞벌이 신혼부부)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국방부퇴직연금급여,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 자산	일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 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금융자산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 자산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 본인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상가 등을 소유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주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일 경우 - 본인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 상가 등의 임차인으로 전·월세를 내는 '임차보증금'의 경우는 해당 없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5

신청접수 안내

※ 허위 기재로 신청한 경우 걸격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터넷 신청안내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OK!", "24시간 신청가능(마감시간 내)"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다른 경우(자격요건(해당신청 자격, 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우선공급순위, 거주지/소득활동지 여부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유무, 서울시(자치구) 최종전입일, 가점사항 등) **신청 자격 걸격**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해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요망) → **청약 시 착오 등으로 본인의 기입한 내역은 절대 변경 불가능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불가)**

○ 인터넷 신청

- 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연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 o/s 정책 변경에 따라 모바일 청약 시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시 해당 내용 팝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로그인(공동인증서 본인확인) → 1단계(공고선택) → 2단계(단지선택) → 3단계(신청 자격확인) → 4단계(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5단계(가점사항입력) → 6단계(인증서 인증확인) → 7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2022. 11. 9. (수) 10:00 ~ 11. 11.(금) 17:00**이며 신청 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십시오.
-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개인용 공동인증서 발급 및 소지
-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최종 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신청 마감 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 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본인이 해당하는 우선·일반 공급에 제대로 신청하셨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해당자가 착오로 일반 공급으로 신청할 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청약 시 본인 거주지(소득활동지) 여부를 제대로 선택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추후 변경이 불가능하며,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결격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방문 인터넷 신청안내

- **방문인터넷 청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3~4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로 청약하시어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선착순 신청이 아닙니다.**
 - ※ 방문청약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미착용 또는 체온 37.5℃ 이상인 경우 **방문청약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 **방문인터넷 신청 대상자**: 인터넷 청약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 **방문인터넷 신청 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강당
- **방문인터넷 신청기간**: 2022. 11. 11.(금) 09:00~16: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 **상기 일정 외 방문인터넷 신청접수 불가**
- **청약방법**: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이 인터넷신청요청서를 작성 후, 공사 직원이 인터넷청약을 대행할 예정입니다.
 - 청약위임 시 제출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제3자 신청 시(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 1통,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 ⇒ 위임장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 **방문인터넷 청약은 고객님의 청약신청내용을 단순히 인터넷으로 입력해드리는 것으로서, 제한된 시간 상 상담 및 질의응답은 불가하오니 아래 숙지사항을 보시고 신청내용을 결정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 **방문신청 시 숙지사항** : 해당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도로명 주소, 자치구최종전입일 및 서울시최종전입일 등을 반드시 **사전 숙지 하시고, 신청 단지를 결정하신 후 방문신청**바랍니다.
 - 자치구 및 서울시 최종 전입일 : 주민등록초본 상 서울시에 최종 전입한 날짜로 확인. 주민등록초본(전체이력 발급) 지참 시 확인 가능
 - 주택청약저축 납입회차 :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후 인정회차 확인 가능

6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안내

구분	내용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1. 18.(금) 16:00 (예정) - 조회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app) 서류심사대상자 조회하기, ARS 서류심사 대상자, 공고 및 공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조회 및 ARS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사항으로, 홈페이지 내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공지의 대상자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방법	<p>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대상자가 결정되며, 추후 서류심사 결과 허위기재가 확인 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 청약 시 착오 등으로 본인의 기입한 내역은 변경 불가능(거주지, 소득 활동지, 서울시(자치구) 전입일 등) 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향후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결격됨을 알려드립니다.</p> <p>[신규공급 단지]는 신청순위 및 가점 순서대로 2배수 내외 [재공급 단지]는 7배수 내외(장위 7은 15배수)로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동일 순위 및 배점은 무작위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p>
심사서류 제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1. 28.(월) ~ 2022. 11. 30.(수)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연락 없이 결격되므로 서류심사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심사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
심사서류 제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기한 내에 <u>등기우편</u>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1월 30일 소인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심사서류 제출주소	<p>(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1층 민간개발금융부 행복주택 담당자 앞</p> <p>※ 제출주소 오기재로 인하여 해당부서 미수취 시, 미제출로 처리되어 결격 처리될 수 있으니 제출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7 심사서류 제출안내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10.24.)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기존 발급분 제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23456-1*****(X)
- 서류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한글정자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이용 제3자제공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한글 정자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개인 싸인 불가)
- 제출서류의 미비, 정상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서류의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신청내용이 다른 경우 서류심사 시 해당 가점이 차감되며 제출한 서류 및 조회자료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국토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발표 예정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 시 '결격'으로 제외 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 결과 확정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공통 제출 서류

	구비서류	비 고	발급처
전원 제출	행복주택 심사서류제출 신청서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시 붙임으로 첨부되어 있는 심사서류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SH 공사 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계층 별 동의서 제출 대상자 참고 • 제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전원 한글 정자 서명,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제출)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동인증서로 동의 시 원본미제출 가능하나 스캔으로 올릴 시 반드시 원본제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도록 상세증명서로 발급 * 단,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 	주민센터
해당자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임신진단서	태아를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계층별 동의서 제출 대상자

분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청년 -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청년 -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계층별 제출 서류

● 청년

대상	용도	제출 서류		발급처	
전원 제출	소득 유무 확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 이력 발급)		국민연금 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 발급)		국민건강 보험공단	
해당자	자격 확인	나.사회 초년생	최종 학력(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	해당 학교	
			재취업준비생	퇴직증명서	해당 직장
		예술인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일 기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센터
			예술활동증명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득활동지로 신청한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직장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그 외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해당 직장 또는 해당 세무서				
병역 의무 이행	병적증명서(군경력 기재하여 발급)	병무청			

● 신혼부부

대상	용도	제출 서류		발급처
전원 제출	자격 확인	가.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나. 예비신혼부부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본인
			위임장 (예비신혼부부용)	공사양식
			행복주택 공동신청확인서 (예비신혼부부)	공사양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확인서 (예비신혼부부)	공사양식
			예비신혼부부 서류 서명란에 1) (자필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인감날인 시)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 본인 및 예비배우자(2인) 모두 제출	주민센터
다. 한부모가족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대상	용도	제출 서류		발급처		
해당자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활동지로 신청한 경우	전원 제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 이력 발급)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 이력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서류 제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직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본인이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그 외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해당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해당 직장 또는 해당 세무서
병역 의무 이행 중		병적증명서(군경력 기재하여 발급)	병무청			

● 고령자

대상	용도	제출 서류		발급처	
해당자	가점 확인	장애인	본인	장애인등록증(등록일 기재)	주민센터
			배우자	배우자의 장애인등록증 (단,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 한정)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1~7급자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 이전 등록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 이후 등록자)	국가보훈처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보훈처

8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 기간</p> <p>○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p>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p>■ 재계약 시 계층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 대상의 해당 연도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 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 대상의 최대 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과거 행복주택에 입주 사실이 있는 자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중인 자가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해당 공급대상의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 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입주 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 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 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청년 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84 1491 1457 1715">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 중 청년 계층의 소득이 변동되어 계약하는 경우에는 추후 갱신계약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거주 중 계층변경으로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변경계층의 임대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 단, 갱신계약 시 자동차자산주택소유 기준을 초과한다면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임대인(서울리츠1,2호)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행복주택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현재 타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을 시 기존의 임대주택 명도 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동 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당첨자 발표 및 동호추첨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추첨

○ 발표일 : 2023. 2. 17.(금) 16:00 (예정)

(ARS(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내 당첨자 조회 및 공고 및 공지의 당첨자 발표 게시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 향후 공급세대 수, 공급면적, 평형, 입주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공급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층(1층~3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이나 저층/고층 배정 등을 사유로 한 동호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동호 교환도 불가능합니다.)
- 공급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 내 공급대상(계층)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예비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로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예비자 공급은 동호추첨 후 개별 통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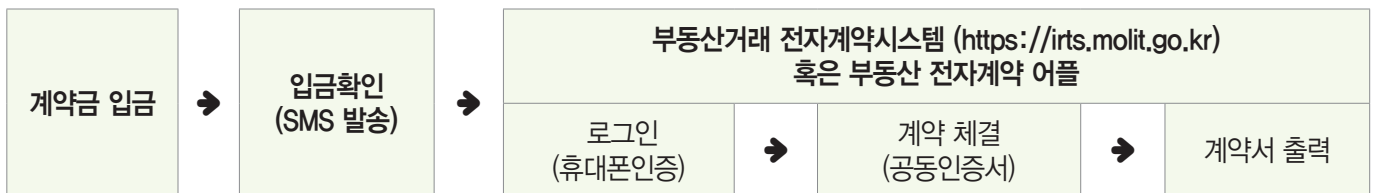
○ 예비입주자

- 신규, 재공급 단지의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퇴거 등으로 공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고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할 공가가 없는 예비입주자 모집의 경우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결정됩니다.
 -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해당 단지, 공급유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이 빠른 순으로 먼저 공급합니다.
- 예비자 공급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부여된 순번의 유효기간은 영구입니다. 다만, 동일유형의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당첨자 발표일) 2년이 경과할 때마다 예비입주자 대상 입주자격 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심사를 위한 연락이 어려운 경우,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 시 입주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예비입주자 지위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사 후 예비 공급 시에는 재심사 시기 임대시세 및 상호 전환율을 새로 반영하여 주택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 공급일정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일시 · 장소 및 구비서류

- 전자계약 일시: 2023. 3. 6.(월) ~ 3. 9.(목) 10:00 ~ 17:00 (예정)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예비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행복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누구든지 동일하게 단지·평형·신청 자격별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 공사 관할 지역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 우리 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동안 업무시간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 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정보가 전송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입금 후 약 1 시간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 공사의 입금확인 문자 수신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계약을 해야 합니다.
- 방문 계약 일시 : 2023. 3. 8.(수) ~ 2023. 3. 9.(목) 10:00 ~ 17:00
- 방문 계약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강당 앞 로비
 - ※ 공사 상황에 따라 계약장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시 계약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방문계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인터넷을 이용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① 계약금납부영수증 ② 본인도장(본인서명가능) ③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④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를 (공사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 만일 계약금을 납부했다라도 계약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동차자산(금융자산 포함) 초과 및 주택소유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소명이 완료되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11 유의사항 안내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 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신청 자격 중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만,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소득기준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심사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해당 관할지역 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 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해당 관할지역 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관할지역센터에서 신청가능) *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는 전액 환불함
예비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같은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기간 중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공사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동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고, 제49조의8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4년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제57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아울러 청약 시 기재하지 못한 태아, 자녀수는 소득산정 시 가구원 수에서 제외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더라도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입주지정종료일 이내 입주 및 입주 시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사집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시기금 재원의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시기금 취급 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형 행복주택의 경우 재개발조합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단지의 준공 이후 등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입주민의 주거급여 임차료 분을 임대인(서울주택도시공사)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으로 신청하지 않은 주거급여수급자도 해당) - 매월 납부해야하는 임차료에서 본인의 주거급여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납부 금액이 없을 수 있음) -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주거급여는 보장기관에서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 •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우리공사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동법 제49조3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고, 제49조의8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4년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제57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단지 유의사항

- 행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편의시설(공간)을 설치하여 지자체 등 운영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 및 주차난 해소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일부(1면~2면)를 나눔카(카셰어링) 사업에 제공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서울시 정책에 따라 발코니 난간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이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 이를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철거 시 철거비용이 발생합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변경)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호수에 따라 전자팸플릿의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 내부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 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동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경로당, 보행로, 야외 운동공간, 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 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장내경보등에 인접한 일부 동은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 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 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해당 단지만),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 동결 또는 동파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형 행복주택의 경우 조합분양주택과 비교하여 일부 시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단지 여건 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저층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및 인근 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혹한기 시설물 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배관에 설치된 열선으로 인해 겨울철 공용전기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매입형 행복주택의 경우 동일 건물(동) 내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와 행복주택 입주자 혼합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해당 공고문의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였습니다. 공급단지별 · 해당 동호별 인근에 위치한 도로 및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 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 임대주택 위치 및 현황

▶ 단지주소

○ 신규공급단지

구분	래미안 엘리니티(용두6)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53-9	
		
	약도	조감도

○ 재공급단지

자치구	단지명	주소
성북구	포레카운티(장위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160
	꿈의숲 아이파크(장위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40길 46
송파구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 (거여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51
마포구	공덕SK리더스뷰(마포로6)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8
영등포구	신길센트럴자이(신길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9길 17
관악구	e편한세상서울대입구2차 (봉천12-1)	서울특별시 관악구 참숯1길 19

▶ 단지별 현황

공급대상	사업주체	시공업체	구조	난방 방식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래미안 엘리니티 (용두6)	서울리츠2호	삼성물산(주)	철근콘크리트	개별 난방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원종합엔지니어링 (주)더베스트이앤씨 (주)아이비엔지니어링
포레카운티 (장위1)	서울리츠2호	삼성물산(주)	철근콘크리트	개별 난방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케이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건일엠이씨 유원이앤에프(주)
신길센트럴자이 (신길12)	서울리츠2호	GS건설	철근콘크리트	개별 난방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e편한세상 서울대 입구 2차 (봉천12-1)	서울리츠2호	(주)삼호 (주)대림 코퍼레이션	철근콘크리트	개별 난방	-	명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 (거여2-2)	서울리츠2호	대림산업(주)	철근콘크리트	개별 난방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종합 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공덕SK리더스뷰 (마포로6)	서울리츠2호	(주)SK건설	철근콘크리트	개별 난방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우정유빅스 엔지니어링
꿈의숲아이파크 (장위7)	서울리츠2호	HDC 현대산업개발(주)	철근콘크리트	개별 난방	주택도시보증공사	(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2022. 10. 24.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